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28

발의연월일: 2020. 11. 4.

발 의 자:이주환·최승재·태영호

배준영 • 윤창현 • 김기현

김용파 · 지성호 · 한무경

이태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·가공·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·가공·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해당 제품·포장·용기의 표면에 표시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·가공·조리한 제품에도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조사하는 등의 사 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음.

이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였을 경우 해당 표시의 제거 또는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4조의2제3항·제4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037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조"를 "지정받은 분야에서 제조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·가공·조리한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한 경우 해당 표시의 제거 또는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

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14조의2제3항에 다른 명령을 위반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법률 제17037호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17037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(대한민국식품명인 제 제14조의2(대한민국식품명인 제 품의 사후관리) ① 농림축산식 품의 사후관리) ① -----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--지정받은 분야에서 제조---이 제조·가공·조리한 제품(이하 "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"이라 한다)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 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 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1. ~ 3. (생략) ② (혂행과 같음) ② (생략) <신 설>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 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·가공·조리한 제 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의 표시를 한 경우 해당 표시 의 제거 또는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3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38조(과태료) ① 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1의2. • 1의3. (생략)

2. ~ 4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<u>4</u>	제3항	-에	따른	<u>=</u>	행	정 :	처분	<u>-</u> 의
<u>구</u> ㅊ	세적인	7]	준은	농	-림	축	산스] 품
<u>부명</u>	형으로	정호	<u>한다</u>					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

<u>1의3.</u>·<u>1의4.</u> (현행 제1호의2 및 제1호의3과 같음)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